

의안번호	제 40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 출 연 월 일	2009년 7월 31일

##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403
----------	-----

제출연월일 : 2009년 7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사유

- 청구인대표 장우정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6일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제8항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함

### □ 주요내용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과 충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을 위하여 조례제정하도록 함(제1조)
-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일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제2조, 제5조)
- 학자금 지원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3조)
- 도지사는 학자금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함(제4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9조)

### □ 조 례 안 : 붙임

### □ 관련법령 발취 : 붙임

##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교육기본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충청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출이자”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의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따른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포함)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충청북도는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충청북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충청북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 보전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간)**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 소속공무원
2.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4. 충북지역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제2항의 위원중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3조(기금지원시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 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기금지원의 지급시기)** 도지사는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수급자의이자 납부기한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
- 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붙임 2>

## 주민청구조례(안) 충북도 검토의견서

### □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요건 적합성

-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장우정 외 2명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발의 청구활동을 진행하여 청구된 조례안임
- 청구안 제정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토록 하여 교육의 실질적 균등실현과 충북도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에 있음
- 지방자치법상의 청구요건인 주민연서수는 11,468명 이상이며, 검증결과 유효서명인수는 12,861명으로 충족되어 조례규칙심의회 (5.28)를 거쳐 청구수리(6. 3)되었음

### □ 다른 시·도 조례제정 사례

- '09년 1학기 기준으로 대학생의 정부지원 학자금 사용시 정부지원 학자금은 소득분위(연간소득)별로 차등하여 지원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16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기제정되었거나, 주민청구안으로 접수, 청구수리 중에 있음
  - 조례 제정 : 대전, 광주, 전북, 전남, 경남
  - 주민청구조례 접수 : 서울 대구를 포함한 7개 시·도

## □ 학자금 지원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방법

- 청구조례(안)은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이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 이자지원 재원의 기금 설치는 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 기금설치 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 지원 바람직함
- 편성된 예산은 직접지원보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 장학재단' 등에 위탁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조례제정시 학자금 이자지원 수혜대상

- 청구조례(안)에서의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범위를 크게 규정
-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혜범위가 광범위('08년 33,426명)하여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단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자지원에 따른 도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이에,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부터 우선 지원하고 지원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

## □ 학자금 이자지원 규모

- 청구조례(안)에서의 이자지원 규모는 학자금 대출시 이자부담 (7.3%) 중 정부지원 이자율(1.5%~7.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부담 이자율을 전부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 소득분위(8~10분위 : 소득 4,47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대출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을 통한 학업의 계속성이라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함
- 이에, 일반대출자를 제외한 저리1종 및 저리2종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하되, 지원규모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가칭)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북도 재정여건, 타 시·도 지원 규모 등을 종합판단하여 결정

## □ 소요예산

- 주민청구조례안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 경우(도내 주소자+타 시도 주소 대학생) 매년 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
- 또한, 도내에만 주소를 둔 대학생 모두에게 이자 전액을 지원시 매년 약 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저리1종과 저리2종에 대하여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약 2억원 소요)